

부산지방법원 2024. 10. 31 선고 2024나42659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## 재판경과

부산지방법원 2024. 10. 31 선고 2024나42659 판결
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. 1. 10 선고 2023가소116095 판결

## 전문

원고, 항소인A

피고, 피항소인B

변론종결 2024. 9. 26.

판결 선고 2024. 10. 31.

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. 1. 10. 선고 2023가소116095 판결

## 주문

-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-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5,5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

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(원고는 제1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다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).

## 이 유

### 1. 기초사실

가. 피고는 김해시 C에서 'D'이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, 원고는 E지역주택조합(이하 '이 사건 조합'이라 한다)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.

나. 피고는 2017. 3.경 이 사건 조합의 사업 부지에서 폐기물 처리작업을 하였다(이하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폐기물 처리비용을 '이 사건 처리비용'이라 한다).

다. 원고는 2017. 3. 2. 피고에게 5,000,000원을 송금하였다.

라. 이 사건 조합은 2019. 9. 29. 피고에게 9,658,000원을 지급하였다.

마. 원고는 2018. 7. 12. F과 B의 계좌로 각 250,000원을 송금하였다.

바. 피고는 2019년경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9차전3925호로 이 사건 처리비용 잔대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(이하 '관련 지급명령'이라 한다)을 신청하였고, 이에 위 법원은 2019. 6. 25. '이 사건 조합은 피고에게 24,885,5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'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, 위 지급명령은 2019. 7. 13. 그대로 확정되었다.

사. 이 사건 조합은 2020. 12. 23. 피고에게 26,000,000원을 지급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, 갑 제1 내지 4, 6호증 및 을 제3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### 2. 원고의 주장 요지

원고는 피고에게 2017. 3. 2. 5,000,000원을, 2018. 7. 12.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합계 500,000원(= F 명의 계좌 250,000원 + B 명의 계좌 250,000원)을 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

조합을 대신하여 이 사건 처리비용을 일부 지급하였다(이하 위 지급금을 '이 사건 기지급금'이라 한다). 피고는 이를 숨기고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처리비용 명목으로 합계 35,658,000원(= 2019. 9. 29.자 9,658,000원 + 2020. 12. 23.자 26,000,000원)을 지급받았는데,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기지급금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취득한 것이거나 또는 원고 및 이 사건 조합을 기망하여 이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5,5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### 3. 판단

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관련 지급명령을 신청할 당시 원고로부터 2017. 3. 2. 지급받은 5,000,000원을 청구금액에서 스스로 공제한 점, ② 원고가 2018. 7. 12. G 및 B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 합계 500,000원은 그 지급 명목이 불분명한 점, ③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을 '대리'하여 또는 '대신'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처리비용을 일부 지급하였다는 것인바, 이러한 금전거래 관계는 원고와 이 사건 조합 사이에서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, ④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조합을 대신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처리비용을 먼저 지급하면 향후 피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은 후 원고의 기지급금을 원고에게 반환하는 방식으로 금전거래를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, 그러한 금전거래의 정산방식은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, 그와 같은 정산합의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기지급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았다거나 또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이를 지급받은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.

### 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, 그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, 이 법원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김윤영

판사오지영

판사양철순